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60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14.

발 의 자 : 김태규 · 김기현 · 이종배
김대식 · 박성민 · 김기웅
최은석 · 서범수 · 이상휘
윤상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집중적인 근로시간 투입이 필요한 산업에서 경직된 연장근로 제한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.

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· 분기 · 반기 · 연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여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(안 제 53조 등).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제4항 본문 중 “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”를 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월·분기·반기·연 단위 등으로 한도를 달리하여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110조제1호 중 “제4항 본문”을 “제4항 전단”으로 한다.

제114조제1호 중 “제53조제4항 단서”를 “제53조제4항 후단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3조(연장 근로의 제한) ① ~ ③ (생략)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u><후단 신설></u> ⑤ ~ ⑦ (생략)	제53조(연장 근로의 제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<u>고용노동부령으로</u>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월·분기·반기·연 단위 등으로 한도를 달리하여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u><단서 삭제></u>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⑤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1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제10조, 제22조제1항, 제26조, 제50조, 제51조의2제2항, 제52조제2항제1호, 제53조제1항·제2항, 같은 조 제4항 본문·제7항, 제54조, 제55조, 제59조제2항, 제60조제1항·	제110조(벌칙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제4항 전단----- -----

제2항·제4항 및 제5항, 제64조제1항, 제69조, 제70조제1항·제2항, 제71조,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, 제75조,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, 제82조,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11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114조(벌칙) ----- ----- -----.
1. 제6조, 제16조, 제17조, 제20조, 제21조, 제22조제2항, 제47조, <u>제53조제4항</u> 단서, 제67조제1항·제3항, 제70조제3항, 제73조, 제74조제6항, 제77조, 제94조, 제95조,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	1. ----- ----- ----- <u>제53조제4항</u> 후단----- ----- ----- -----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